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지급대상에 대한 근거규정 및 기준 명확화(안 제1조)

나.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(안 제3조)

-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31조 →「지방세징수법」제25조

다.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인용 조문 변경(안 제9조)

-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90조제3항 및 제4항 →「지방회계법 시행령 」제36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세법』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⑴ 입법예고 : 2018. 8.22. ~ 2018. 9.10.(20일간)

⑵ 규제심사 : 심사 대상이 아님 〔기획감사실-5977(2018. 8. 9.)〕

⑶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-45904(2018. 8.16.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세정발전과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주군”으로, “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”를 “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사용하는 용어 중 ‧‧세입‧‧이라함은”을 ““세입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새마을개발과장”을 “새마을체육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”을 “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주군 --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---------.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··세입··이라함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말한다.	제2조 (정의) --------- "세입"이란 ----------
제3조 (지급대상) ① (생 략)	제3조 (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.	②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에 따른 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 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6조 (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, 위원은 총무과장, 민원봉사과장, 새마을개발과장, 산림 과장으로 한다.	② ---------- 새마을체육과장-----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9조 (지급) ① (생 략)	제9조 (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, 수령자가 금융기관	② ----------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36조----------

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.	----------.